

[사회민주당 당헌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제1조(명칭) 우리 당은 ‘사회민주당’이라고 한다. 약칭은 ‘사민당’으로 한다.	제1조(명칭) (조항변경) ① 우리 당은 ‘사회민주당’이라고 한다. 약칭은 ‘사민당’으로 한다. <신설>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Korea’로 한다.	영문표기 추가 예시) 독일 사회민주당의 영문명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제3조(조직) ①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u>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둔다.</u>	제3조(조직) ①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 부분은 현행 당헌 제23조에 규정이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함
	[신설] 제0조(소통과 보고의 의무) 선출직 공직자와 선출직 당직자는 당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당의 입장을 설명·보고하고 설득할 의무가 있다.	
제4조(당원) ① 생략 ② 당원은 3,000원 이상의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주권당원과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참여당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당원) ② 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으로 나눈다.	최소 당비규정과 당비납부 기간에 대해 당규로 위임함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명’ 추가
제7조(여성, 청년, 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 청년, 장애인 당원의 공직, 당직 진출의	삭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당헌 제33조 제2항 및 신규 당헌 조항 신설로 당규 위임사항으로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확대 등을 위해 선출 정수가 1명인 당직선거를 제외한 당직선거와 모든 공직선거 당내 경선 출마 시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30%를 가산한다.</p>		<p>변경</p>
<p>제8조 (당원총투표)</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p> <p>1~2. 생략</p> <p>3.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p> <p>4. 전체 주권당원 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또는 <u>전국위원회 10명 이상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u></p>	<p>3. 대표단 회의 또는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p> <p>4. 전체 <u>당원</u> 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p>	<p>● 3호 개정취지 대표단 회의가 직접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건의 처리'라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정함</p> <p>● 4호 개정취지 - 연서명 발의 기준을 '주권'당원 3% 이상에서 참여당원을 포함한 전체 당원 3%로 개정함 - 전국위원회 10인 연서명은 본조 제3호에서 전국위 과반의 결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하여 삭제</p>
<p>제4장 대의기구</p> <p>제9조(전국위원회)</p> <p>① 생략</p> <p>② (<u>구성</u>)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4. 생략</p>	<p><u>제4장 전국위원회</u></p> <p><u>제9조(지위와 구성)</u></p> <p>②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u>[신설] 5.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u></p>	<p>전국위원회가 유일한 대의기구라는 점에서 개정함</p> <p>제4장 제목이 전국위원회이므로 중복된다는 점에서 개정함</p> <p>조항제목 삭제(양식 통일)</p> <p>당연직 전국위원의 추가</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5. 대표단의 결정에 따라 정수 10% 이내의 지명직 전국위원을 둘 수 있다.</p> <p>③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9. 생략</p> <p>10. 대표단 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p> <p>11~12. 생략</p> <p>④ (임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소집 및 운영) 전국위원회는 대표단 회의가 소집한다. 단, 재적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u>전국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맡는다.</u></p>	<p>6. 대표단의 결정에 따라 <u>선출직 전국위원</u> 정수 10% 이내의 지명직 전국위원을 둘 수 있다.</p> <p>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0. 대표단 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u>의결</u></p> <p>④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u>단, 그 임기는 차기 전국위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u></p> <p>⑤ 전국위원회는 대표단 회의가 소집한다. 단, 재적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p> <p>[신설] ⑥ 전국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p> <p>[신설] ⑦ 전국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신설] ⑧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정수’ 의미를 분명히 하여 ‘선출직 전국위원 정수’라고 규정함</p> <p>조항제목 삭제(양식 통일)</p> <p>‘심의’는 의논만 하는 것으로 정식 의결을 할 수 없어, ‘의결’을 추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제목 삭제 ● 선거일정 등에 따라 정확히 2년 내에 당직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서를 추가함 ● 조항제목 삭제 ● 전국위원회 의장 관련 규정이 6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개정함 <p>전국위원회 의장에 대해 당헌으로 정하되, 기타 의사진행 관련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위임함</p> <p>선출직 당직자 선출에 대해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함</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제10조(당대표) ①~② 생략 ③ (권한) 당대표의 권한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p>	<p>7.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 [신설] 8.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p>	<p>당대표 권한으로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 권한을 추가함 제7호 신설로 인한 이동</p>
<p>제13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당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13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당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u>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시 까지로 한다.</u></p>	<p>선거일정 등에 따라 정확히 2년 내에 당직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서를 추가함</p>
<p>제14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 3인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부대표 1인을 대표가 선출된 부대표와 협의하여 지명할 수 있다. ②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 시의 차기 당대표 선출까지 득표수 순이 앞서는 부대표가 권한을 대행한다.</p>	<p>① 당대표와 부대표 3인은 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신설] ② 당대표는 선출된 부대표와 협의하여 부대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③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 시는 차기 당대표 선출까지 득표수 순이 앞서는 부대표가 권한을 대행한다.</p>	<p>부대표 3인은 선출하고 그외 1인은 당대표가 지명한다는 의미를 분명히하고, 의결방법으로서 ‘당원총투표’와 구별하여 ‘당원 투표’라고 정정함 조항 신설로 인한 이동</p>
<p>제2절 위원장 연석회의 제15조 당무 전반에 관한 의견</p>	<p>제15조(지위와 구성)당무 전반</p>	<p>조항 제목 추가함</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수렴 및 협의를 위해 시·도당 연석회의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p> <p>제16조(소집)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한다. 단, 필요시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p>	<p>에 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시·도당 연석회의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p> <p>제16조(소집)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는 <u>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u>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p>	<p>현재 사회민주당 사정에 따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규정은 삭제하고 시·도당 연석회의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위임함</p>
	<p>[신설] 제00조 (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전략협의회 신설함</p>
<p>제3절 각종 집행기구</p>	<p>제3절 각종 <u>기구</u></p>	<p>제5장 제목이 '집행기구'라는 점에서 중복되는 표현이 있어 개정함</p>
	<p><신설> 제00조 (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p> <p>①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p> <p>③ 시·도당의 설치, 직제, 운영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법,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시·도당 위원장의 지위와 임기에 대해 명시하고,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 당규를 규정할 수 있도록 당헌에 근거를 규정함</p>
<p>제2절 지역위원회</p> <p>제23조(지위와 구성)</p> <p>① 생략</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②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30인 이상 주권당원이 있는 지역에 두며, 민주적인 절차와 해당 시·도당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p> <p>③ 생략</p>	<p><u>② 지역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와 해당 시·도당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u></p> <p>[신설] ④ 지역위원회의 설치, 직제, 운영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법,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지역위원회 설치 기준에 대해 당규로 위임함</p> <p>지역위원회 설치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당규로 위임함</p>
<p>제7장 원내기구</p> <p>제1절 의원총회</p> <p>제25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전국위원회 직속 원내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p> <p>제26조(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p> <p>1. 원내대표의 선출</p> <p>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p> <p>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p> <p>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p> <p>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의</p>	<p>제1절 의원총회</p> <p>제25조(지위와 구성)</p> <p>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p> <p>②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당무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p> <p>③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제2절 원내대표</p> <p>제26조(원내대표)</p> <p>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p>	<p>사회민주당 원내 규모를 고려하여 내용을 축소하고 당규로 위임함</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심의, 의결</p> <p>6. 당 전국위원회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p> <p>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 의결</p> <p>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p> <p>9. 정당법 제33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p> <p>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p> <p>제27조(소집 및 운영)</p> <p>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단,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한다.</p> <p>② 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절 원내대표</p> <p>제28조(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p> <p>제29조(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p> <p>①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 회의 주재</p> <p>②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p> <p>③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p>	<p>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p> <p>②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p> <p>③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④ 원내대표의 선출과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이하부터 제8장 이전 부분까지 삭제></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 청</p> <p>④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p> <p>제30조(선출 및 임기)</p> <p>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 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 1 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 출하며, 재선출 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 다.</p> <p>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 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당대표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 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 있으면 해임된다.</p> <p>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제31조(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 표와 원내부대표를 둔다.</p> <p>제32조(원내대책회의)</p> <p>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 전반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 회의를 둔다.</p> <p>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 정하는 부대표 및 국회의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p> <p>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 대표가 맡는다.</p>		
<p>제8장 공직선거</p> <p>제33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p> <p>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총투 표로 선출한다. 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참여당원, 국민, 지지자 등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 하여 선출할 수 있다.</p>	<p>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u>당원투표</u> 로 선출한다. 단, 전국위원회 결 정에 따라 참여당원, 국민, 지지자 등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 여 선출할 수 있다.</p>	<p>당원들의 의결방법으로서 ‘당원 총투표’와 선출방법으로서의 ‘당원투표’를 구별하기 위해 수정함</p>
	<p>[신설] 제00조 (재·보궐선거후 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 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 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 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의 결정 으로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 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공직선거 재보궐선거에 대하여 전국위원회 결정 등으로 선출방 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 함</p>
<p>제39조(선거관리위원회)</p> <p>① 생략</p> <p>②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 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p>	<p>[신설] ② 지역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 우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 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한다.</p> <p>③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 리하고 시·도당 및 지역 선거관 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p>	<p>지역위원회 사정에 따라, 상급 선관위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함.</p> <p>조항 신설로 인한 이동</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③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p> <p>④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④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p> <p>⑥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조항 신설로 인한 이동</p> <p>기존 오기 수정 및 조항 신설로 인한 이동</p> <p>기존 오기 수정 및 조항 신설로 인한 이동</p>
<p>제41조(재정 구성)</p> <p>① 생략</p> <p>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p>	<p>② 당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 2.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 3. <u>당직자, 당 소속 공직자, 보좌직원이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직책당비</u> 4. <u>기타 당규가 정한 당비</u> 	<p>직책당비와 기타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추가함</p>
	<p>[신설] 제00조(중앙당후원회)</p> <p>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중앙당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중앙당 후원회 규정을 신설함</p>
	<p>[신설] 제12장 중간평가제</p> <p>제00조 (중간평가제) ① 당</p>	<p>중간평가제 실시 근거를 당헌에 명시함</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기타 당규에서 정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중간평가제를 실시한다.</p> <p>② 중간평가제 운영, 평가 방법,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평가 결과의 효력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제12장 보칙</p> <p>제43조(의결정족수)</p> <p>① 생략</p> <p>②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p> <p>③ 생략</p>	<p>제43조(의결정족수 및 <u>선출방법</u>)</p> <p>[신설] ④ 본 규정 ②항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당직자 재·보궐선거(당대표 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서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p> <p>[신설] ⑤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신설] ⑥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재·보궐선거는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p>	<p>조항 제목 수정</p> <p>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재·보궐선거의 경우 경우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당대표의 경우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함</p>
<p>제45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전을 제</p>	<p>제45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전을 제</p>	<p>오기 수정</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신설] 제00조 (동시당직선거)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의 선거 실시 이전에 지역위원회를 창당하여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전국동시당직선거에 대하여 규정함</p>
	<p>부칙 <2000. 00. 0, 제2호> 이 당헌은 당원총투표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p>	